

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 재 공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통장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7월 13일

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장

1. 후보자 등록대상 : 당하동

해당통	관할구역	비고
10통	청마로134번길 17-2, 17-4(황소마을), 17-6(정암아트B), 17-8(정암아트A), 7-10(노블레스빌), 23-1(비너스), 23-3(샤넬), 23-5(루현빌), 23-7(청송), 23-9(백송), 23-11(루비하우스), 청마로134번길 10-1, 10-13(아리랑), 12(미나하우스), 18(포도마을), 18-6, 18-8, 18-10(샤넬II), 청마로134번길 18-3(우석하우스), 18-4, 18-5, 18-7, 18-9(소미하우스), 22(시리우스), 24(태양), 26(다빈치), 26-1(거문고), 28, 청마로134번길 10-19(우석파크빌), 10-21(피카소), 10-23(해피홈), 10-25(디에이치빌화이트), 10-27(둥지), 10-29(디에이치빌블루), 당하동759-3, 762-1, 762-2, 763, 883-20, 드림로 406-1, 438-4, 서곶로 770, 782, 청마로112번길 10, 15, 15-1, 20	
20통	청마로134번길 13-13(대림타운), 13-15(휴먼스빌), 13-17(엘린하우스), 청마로 148번길 20(장미홈타운), 22(명성빌), 24(검단미래가), 26, 청마로134번길 13-16(드림파크빌), 13-18(하늘빌), 17-12(푸른주택), 23-10(명동타운), 23-12(메이플라워), 청마로148번길 12, 14, 18, 청마로134번길 13-3(노송마을), 13-5(당하타운), 13-7, 청마로134번길13-2(한울타리), 13-4(청솔마을), 13-8(정원주택), 13-10(성민주택), 17-3(삼성파크타운), 17-7(이에스타운B), 17-9(이에스타운A), 17-11(우리동네), 17-13(에쿠스)	
25통	원당대로608번안길9-12, 9-14 9-16, 9-16, 9-26, 9-28, 9-29, 9-30, 9-40, 9-43, 원당대로608번안길2 청마로 46(퀵스타운), 청마로34번길16(탑빌리지), 청마로34번길17(비전뷰) 청마로34번길 22(드림힐), 청마로34번길 23, 25(드림힐), 청마로34번길 25-1 청마로34번길 33, 35, 37, 39, 40, 40-1, 40-2 (온누리정원)	
29통	드림로305번길 58(서연빌리지), 드림로60, 62, 64(디자인타운) 드림로305번길42(더힐하우스), 드림로305번길44(모나코), 드림로305번길53,55,59,61(ds테라스) 드림로299,299-1,301, 301-1, 303, 303-1, 303-2(건우에코타운), 305(행복드림)	

2. 후보자 등록 신청

가. 접수기간 : 2023.7.13.~2023.7.28.(18:00 한) 근무시간 내 (토요일, 공휴일 제외)

나. 신청방법 :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(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)

다. 신청자격

-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현재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

-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
-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

라. 제출서류

- ① 주민등록초본 1통, 반명함판 증명사진 1매, 통장후보자등록신청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
(당하동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동 홈페이지에서 다운)
 - ②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및 참고자료
 - 봉사활동 :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으로서 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
 - 그 밖에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(언론보도, 구보 등)
- ※ 이력서 허위 기재 및 허위경력 제출 시 형법 제 137조에 의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위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

마. 위촉절차

- ① 「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동장이 위촉
-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- ③ 심사기준표의 평균점수가 50점 이상인 자를 통장으로 위촉
- ④ 순위결정
 - 각 위원별 심사기준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후보자부터 순위를 결정함
[통장위촉심사결과서 붙임#8 참조]
 - 동점자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함
 - (1) 당하동 거주기간(전입일자 기준)
 - (2) 봉사실적
 - (3) 연장자

바. 임 기 :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,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(총 8년 재직가능)

사. 문 의 :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☎ 032-718-5383)